

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지정 및 해제 공고

「관세법」 제38조제2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5호, 「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」 제20조제3항에 따라 사전세액심사 추가 지정 및 해제 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□ 추가 지정 품목(4개)

구분	품목번호(HSK)	품목명	비고
1	1515.90-1000	들기름과 그 분획물	지정
2	2001.90-9060	초산 마늘	지정
3	0904.22-0000	부순 건고추	지정
4	1202.41-0000	꼬투리 땅콩	지정

□ 해제 품목(8개)

구분	품목번호(HSK)	품목명	비고
1	1201.90-3000	콩나물용 대두	해제
2	1201.90-9000	기타 대두(서리태 제외)	해제
3	0813.40-1000	건조 꽃감	해제
4	1605.54-2091	조미오징어채	해제
5	0507.90-1110	녹용 전지	해제
6	0507.90-1190	녹용 기타	해제
7	7101.10-0000	가공한 천연진주	해제
8	7101.22-0000	가공한 양식진주	해제

※ 지정 또는 지정 해제 시 까지 적용, 표준품명기재요령은 별첨 참고

시행일 : 2023. 11. 1.

관 세 청 장